

「구미시 농업기계 구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7월 7일

나. 발 의 자: 장세구 의원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원섭, 소진혁, 신용하, 이지연, 정지원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7월 8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7월 16일

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장 세 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현행 3년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많은 농업인에게 지원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신청 제한 기한 변경(안 제3조제1항제1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」 제8조제2항제8호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7. 8. ~ 7. 13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 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‘3년’ 에서 ‘5년’ 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농업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고가 장비로 인한 농업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나 일부 농업인에게 반복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, 수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- 다만,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지원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·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농업기계 지원사업의 현행 평가심사표는 세부평가항목에서 영농 규모가 크고 경력이 많은 농업인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규모 농업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,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평가심사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